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5. 7.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95. 7. 3 영등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95. 7. 18

다. 상정일자: 제35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95. 8. 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총무국장 윤정중)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정원조례와 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의 정원 규정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자치구정원을 규정하여 업무의 연계성을 확립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자치구정원조례에 구의회사무국 정원을 규정

○부구청장의 직이 지방부이사관에서 부이사관으로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허영훈)

제2조 중 제1호 구본청의 정원을 조정하는 것과 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구의회사무국의 정원을 함께 규정하기 위하여 제2조 중 제2호로 구의회사무국의 정원을 규정하고 제2조와 제3조의 “의회사무기구”를 삽입하는 것으로써

1. 제2조 중 제1호 구본청의 정원을 975명에서 974명으로 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4항에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법 부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민선구청장의 임기만료일까지의 부구청장은 한시적으로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구본청 지방공무원의 정원 1명을 줄이는 것이며,

2. 제2조와 제3조의 내용에 “구의회사무기구”를 삽입하고 제2조 중 제2호로 구의회사무국 정원을 규정하는 것은 이제까지 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와 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영등포구의 지방공무원정원을 이원적으로 관리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14647호, 1995. 5. 16)됨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총정원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하나로 일률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원관리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영등포구 지방공무원의 총정원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관계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의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
----------	---

제출년월일: '95. 7. 12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95. 5. 16) 자치구정원조례와 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의 정원 규정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자치구 정원조례에 구의회사무국 정원을

규정하여 업무의 연계성을 확립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자치구 정원 조례에 구의회사무국 정원을 규정
- 부구청장의 직급이 지방부이사관에서 부이사관으로 변경

3. 개정근거

- '94. 3. 16-법률 제4741호(지방자치법) 부칙 제5조 제1항
- '94. 12. 31-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
- '95. 6. 30-지방자치법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령
- 시정 12200-354('95. 5. 23) 기구·정원규정 운용지침
- 시정 12200-446('95. 6. 30) 지방자치단체장 직선 관련 정원에 관한 조치계획 통보

4. 개정조례(안):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본청·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를 “본청·의회사무기구·소속기관 및 동에”로 하고, 동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본청: 974명

제2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구의회사무국: 27명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직급별 정원규정) 구의 본청·의회사무기구·소속기관 및 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본청·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과 같다. 1. 구 본 청: 975명 2. 직속기관: 74명 3. 동: 472명	제2조(정원의 총수) 본청·의회사무기구·소속기관 및 동에 1. 구 본 청: 974명 2. 구의회사무국: 27명 3. 직 속 기 관: 74명 4. 동: 472명
제3조(직급별정원의 규정) 구의 본청·소속기관 및 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직급별정원의 규정) 구의 본청·구의회사무기구·소속기관 및 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제2조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